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24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10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12
4. 정부 의견	13
5. 주요 조문별 검토	14
가. 제정안의 목적 및 기념관의 업무(안 제1조 및 제6조)	14
나. 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6
다. 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23
라. 예산의 편성(안 제18조)	26
마.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20조)	28
바. 설립 준비행위 등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0
사. 기타 체계·자구에 관한 수정사항(안 제11조 및 제21조)	34
※ 참고자료	35

I. 제안경위

1. 발의자 : 나경원의원 등 32인
2. 발의일 : 2025. 3. 27.
3. 회부일 : 2025. 3.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지 내에는 제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서해를 수호하며 겪은 주요 전투의 역사를 조명하는 ‘서해수호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시설 내에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전승함으로

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국민교육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로 정함(안 제6조).

라.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마.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 제정안은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서해수호’의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해수호’는 제1연평해전(1999. 6. 15.), 제2연평해전(2002. 6. 29.), 대청해전(2009. 11. 10.), 천안함 피격 사건(2010. 3. 26.), 연평도 포격 사건(2010. 11. 23.) 등 서해를 지키기 위해 발생한 해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¹⁾ 해당 해전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음.²⁾

[표 1] 서해수호 관련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 대상자	전사 (전몰 군경)	전상 등록 현황					전역 후 미신청	복무중
			소계	등록 (전상)	등급 미달	요건 비해당	진행중		
계	184	55	83	64	4	1	14	17	29
제1연평 해전	32	-	16	3	1	-	12	5	2
제2연평 해전	29	6	17	15	-	-	2	3	5
천안함	105	47	34	32	1	1	-	10	24
연평도	18	2	16	14	2	-	-	-	-

자료: 국가보훈부

1) 서해수호관 홈페이지 중 서해수호의 역사 참조(<https://wsph.navy.mil.kr/index.html>).

2) 대청해전과 관련하여서는 무공훈장을 받은 6명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국가보훈부).

- 현재, ‘서해수호’와 관련된 시설로는, 대한민국 해군(국방부) 소관의 서해수호관(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 안보공원 소재)이 2011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해당 기념관은 군사시설 내에 위치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³⁾

[표 2] 서해수호관 개요

- (건립배경)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고취하고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함대 내 안보공원을 조성, 국민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
- (규모) 건축면적 6026.31㎡(1,849평)
* 서해수호관 70.8억 원, 천안함 전시시설 80억 원, 천안함 기념관 44.5억 원
- (전시내용) 서해수호 해군 장병들이 당시 참전했던 군함, 현장에서 사용했던 각종 전투물품, 전사자들의 유품 등

구분	서해수호관		천안함기념관*	천안함 전시시설*
주제	NLL과 해전실 (1층)	천안함실 (2층)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추모	선체, 대형유물, 전망대, 조형물

* 천안함기념관 및 천안함 전시시설은 서해수호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2016년)되면서,⁴⁾ 국가보훈부는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나, 현충시설로 지정된 ‘서해수호’ 관련 기념관은 부재하므로,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3) 다만, 사전신청을 할 경우 서해수호관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음.

4)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표 3]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개요

- (취지) 서해수호 3개 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
 - * 제2연평해전,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전
- (일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 * (2025년) 2025. 3. 28.(금) / 국립대전현충원
- (인원) 1,500여명 내외
 - *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 참전장병 및 부대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제정안은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으로 건립하고, 그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인이 ‘서해수호용사’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보관하고 그 희생과 공헌에 관한 선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일응 긍정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 제정 필요성, 신규 기념관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기념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보훈부가 기념관 건립에 관여하는 방식에는 국가보훈부가 건립을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보훈 기본법」⁵⁾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⁶⁾에 근거하여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법률 제정 및 법인 설립 없이도 기념관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 서해수호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념관의 건립 추진방식, 추후 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등은 「국가보훈 기본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훈선양시설

- 5)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또는 현충시설 건립 지원 근거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경우, 제19대국회 및 제20대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한 건립과 관리)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폐기된 후, 국가보훈부가 직접 건립을 추진한 바 있음.⁷⁾
- 이와 달리, 국가보훈부가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기념관 시설 중 개별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건립한 사례로는 “독립기념관”이 유일한데, 이는 건립비용(945억원)의 상당 부분이 국민성금(698억원)으로 충당되어 해당 시설을 별도의 법인이 소유토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임.

[표 4] 기념관 건립 방식 유형 등

구분	건립 비용 지원			직접 수행
	별도 법인 설립	국고 보조		
기념관명	독립기념관	독립유공자 주재년 열사 기념관, 용성전승관 등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 유엔평화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 정부기념관
소유	법인	민간	국가	국가
비용 지원 근거	독립기념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
관리 방식	독립기념관	민간	사업회 위탁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자료: 국가보훈부

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6613, 2000194)

[표 5] 현충시설 지정 기념관 소유자별 현황

(2025. 6. 20.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교육청 소유 (직접관리)	민간 등 소유	공공 기관
		소계	직접 관리	산하 기관	민간 위탁	소계	직접 관리	산하 기관	민간 위탁			
계	111	14	6	3	5	80	44	8	28	5	11	1
독립운동	80	4	1	0	3	62	34	7	21	2	11	1
국가수호	31	10	5	3	2	18	10	1	7	3	0	0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서해수호’에 관한 기념관으로는, 서해수호의 역사, 관련 기록 및 물품 등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서해수호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서해수호기념관”이 건립될 경우에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주요 업무⁸⁾도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과 시설의 관리·확충이 될 것으로 보여, 두 시설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해수호관’ 외 별도의 기념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8) **제정안 제6조(업무)** 서해수호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2. 국민의 안보관 정립을 위한 국민교육
3. 국방 관련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 개최
4. 서해수호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서해수호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서해수호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수행하려는 업무 중 “서해수호관”의 기능과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 업무 외에,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인 안보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 국방에 관한 학술회의 업무 등은 전쟁기념관⁹⁾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달성하려는 제정안의 목적은 기존 시설의 활용 및 운영방식의 개선 등으로도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¹⁰⁾이 있다는 점도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기념관 또는 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의 확정, 건립 계획의 수립과 함께 관련 예산의 편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념관 건립을 전제한 법 제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선행 절차에 대한 준비 상황 등 제반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9) 전쟁기념관은 초등-중등-성인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쟁기념사업회는 ‘6·25전쟁과 아시아’ 국제 학술회의(2025. 5. 28.), 6·25전쟁 교훈과 안보 정책 방향(KWO 나지포럼)(2024. 6. 21.) 등 국방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0) 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

11)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2015. 11. 25.) 회의록 83면,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2016. 11. 23.) 회의록 12면 참조.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22개의 조문의 본칙과 3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서해수호기념관”이라는 재단법인형 특수법인을 설립하려는 조직법으로, 재단법인형 특수법인 조직법의 체계인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법인격, 설립, 정관 등), 조직 및 기관에 관한 사항(임원, 이사회 등), 재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회계연도, 보조금 및 출연, 예산의 편성, 결산서의 제출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민법」 중 재단법인의 규정 준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가보훈부가 주무부처인 재단법인형 특수법인 조직법 중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기념관법」과 동일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6] 제정안의 구성체계

구 분	제정안	「독립기념관법」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법인격	법인격
제3조	설립	설립
제4조	사무소	사무소
제5조	정관	정관
제6조	업무	업무

구 분	제정안	「독립기념관법」
제7조	임원	임원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9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이사회	이사회
제12조	사무처	사무처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13조	보조금 및 출연	보조금 및 출연
제14조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15조	관람료 및 이용료	관람료 및 이용료
제16조	회계연도	회계연도
제17조	차입금	차입금
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예산의 편성 등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20조	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제21조	지도·감독	지도·감독
		(제21조의2) 주변경관의 보존
제22조	「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설립준비	
제3조	설립 당시의 관장 임명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 제정안과 같이,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고 “서해수호기념관” 법인을 설립하며 임직원을 고용하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념관 시설 건립 비용과 사무처 운영 경비, 사업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서해호수호기념관의 주된 사무소 위치, 조직 및 임직원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¹²⁾
- 참고로, 국가보훈부가 건립하였거나 건립 비용을 지원한 기념관에 소요된 건립 비용 및 연간 운영 예산 지원 규모 등을 통하여 기념관 규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7] 기념관별 규모 및 지원 예산

구분	독립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임시정부기념관	안중근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시설 규모	(부지)118만평 (건평)2만평 ▪ 83개동	(부지)7,277평 (건평)641평 ▪ 지상 2	(부지)5,552평 (건평)2,929평 ▪ 지하1, 지상2	(부지)1,106평 (건평)2,935평 ▪ 지하3, 지상4	(부지)1,749평 (건평)1,138평 ▪ 지하2, 지상2	(부지)2,060평 (건평)2,420평 ▪ 지상 5
직원 (정원)	139명	8명	14명	84명	8명	12명
건립 비용	945억 원	129억 원	167억 원	470억 원	180억 원	258억 원
‘25년 예산	27,479백만 원	658백만 원	1,759백만 원	9,224백만 원	1,341백만 원	1,619백만 원

자료: 국가보훈부

12)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4. 정부 의견

- 국가보훈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기념관 건립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예산지원을 통한 현충시설 건립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고, 제정안에 따른 서해수호기념관은 대한민국 해군(국방부)의 서해수호관과 설립 목적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기념관 건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등 현행 법률에 의하여도 추진할 수 있어 제정안 신설은 불필요하고, 서해수호기념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서해수호관, 전쟁기념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등 타 시설 활용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서해수호기념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양여 및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및 재정 손실을 초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정안의 목적 및 기념관의 업무(안 제1조 및 제6조)

- 제정안 제1조는 서해수호기념관 설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제6조는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군인과 국민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온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업무) 서해수호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2. 국민의 안보관 정립을 위한 국민교육 3. 국방 관련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 개최 4. 서해수호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서해수호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서해수호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제정안은 군인과 국민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를 ①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제1호), ② 국민의 안보관 정립을 위한 국민교육(제2호), ③ 국방 관련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 개최(제3호) ④ 서해수호기념관의 시설의 관리 및 확충(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그 애국정신을 기린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목적은 국가보훈정책 및 공훈선양사업¹³⁾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념관이 수행하려는 업무 중 국민의 안보관 정립을 위한 국민교육 사업이나 국방 관련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 사업 등은 국가보훈부의 직무 범위¹⁴⁾나 공훈선양사업과의 관련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하여 기념관의 업무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14)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나. 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제정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인의 기관인 임원(이사, 감사)의 구성, 자격과 결격사유, 임명 절차,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임원) ① 서해수호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서해수호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보훈부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
3.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서해수호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 정 안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해수호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또는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법인의 이사, 감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 또는 감독하는 기관으로, 제정안은 “서해수호기념관”에 15명 이내의 이사(관장 1명 포함)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장, 이사, 감사에 관한 구체적인 임명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임원 구성 및 임명 절차 등은 국가보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자 재단법인형 특수법인인 독립기념관의 규정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¹⁵⁾

15) 다만, 광복회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것과 같이 법인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8] 서해수호기념관의 임원 구성 및 임명절차 등

구분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		제정안 (서해수호기념관)
임원 구성	이사 15명 이내, 감사 1명		좌동
임원 임기	관장 3년, 이사 및 감사 2년 (각각 1년 단위 연임 가능)		좌동
임원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좌동
관장 임명 절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복수 추천 → 국가보훈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좌동
이사 구성 및 임명 절차	광복회 회장(1명)	당연직	-
	국가보훈부 보훈 선양 담당 국장(1명)	당연직	좌동
	국회의원(4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	좌동
	임명직(8명 이내)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복수 추천 → 국가보훈부장관 임명	좌동
감사 임명 절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복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좌동

□ 제정안의 임원 구성 및 임명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사의 임명권자 및 절차 중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추후 법인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다면, 그 규모 등에 따라 지정될 공공기관의 유형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임원의 임명권자 및 절차 등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은 법인에 15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임명 절차에 관하여는 14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남은 1명의 이사의 임명권자 및 임명 절차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정안의 임원의 임명 절차 규정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의 준정부기관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법인이 설립된 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운영법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¹⁶⁾

서해수호기념관의 임원 임명권자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서해수호기념관의 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 등에 따라 추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유형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서해수호기념관의 관장, 임명직 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16)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절차에 해당함.¹⁷⁾

- 그런데,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관리 주체, 임원 임명 절차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을 상향¹⁸⁾하였는 바, 상향된 지정기준과 그 변경 취지 및 서해수호기념관의 규모 등에 따라 지정될 공공기관의 유형을 고려하여 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제3절 임원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8) (직원 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30억원 이상

[표 9]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과의 비교

구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 실시
임원 임명절차	공공기관운영법상 임명절차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2023. 1. 30.) 재구성

- 독립기념관도 2023년 지정기준 변경에 따라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¹⁹⁾

□ 한편, 제정안의 체계 · 자구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8조는 법인의 이사 중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로 정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직위에 재임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를 당연직 임원인 안 제7조제3항제1호(국가보훈부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9)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는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01호).

[표 10] 체계·자구에 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정안	비 고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제7조제3항제2호에</u>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 ----- ----- -----제 <u>7조제3항제1호에</u> ----- ----- -----.	■ 안 제7조제3항제1호: 국가보훈부 보훈 선양 담당 국장(당연직) ■ 안 제7조제3항제2호: 국회의원(지명)

다. 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 제정안 제14조는 서해수호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해수호기념관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여·무상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 제정안은 서해수호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국유재산의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특례를 규정하려는 개별 법률이 추가되지 않고는 개별법에서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할 수 없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만 가능하므로,²⁰⁾ 제정안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 관련하여, 2025년 8월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정안을 포함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는 않음.
- 또한, 국유재산 특례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고,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²¹⁾ 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을 허용할 것인지는 공익적 필요성, 예산 지원 등 다른 경제적 지원 방법 대비 특례 허용의 적절성, 적용요건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공유재산의 특례 신설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양여 및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타 기관·법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 그 밖에, 제정안 제14조에는 일부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1] 체계·자구에 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정안	비 고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수호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u>독립기념관에</u>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 ----- ----- ----- ----- ----- <u>서해수호기념관에</u> ----- -----..	■ “서해수호기념관” 오기

라. 예산의 편성(안 제18조)

- 제정안 제18조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안 편성 절차와 예산 확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관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정안은 서해수호기념관 관장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정된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공기관운영법 제46조 및 제50조 등 같은 법 제5절의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은²²⁾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22) 공공기관운영법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으로, 앞선 나.항(19~21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해수호기념관의 직원 정원, 자산규모 등에 의하여 향후 지정될 공공기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영평가의 주체(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 및 적용 규정이 결정될 것이므로, 경영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에 맞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또는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하여는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또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부칙을 둘 필요가 있음.

[표 12] 참고 입법례

구분	내용
독립기념관법 부칙 <법률 제3820호>	제5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9592호>	제10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마.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20조)

- 제정안 제20조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상대방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서해수호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법제처는 동 조항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연구단체 등 민간의 기관 또는 관계인에게도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의 제공 등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제공요청의 목적 및 대상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임.

- 제정안 제20조의 자료제공의 요청 규정은 「독립기념관법」 제20조²³⁾와 동일한 내용이나, 「독립기념관법」의 해당 규정을 모범으로 삼

23) 「독립기념관법」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기에는 적절한 입법례로 보기 어려움.

-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수호기념관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떠한 자료든지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자료의 범위를 안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자료제공 요청의 상대방을 이에 관계된 기관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²⁴⁾

24) [참고 입법례]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등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국립박물관단지운영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바. 설립 준비행위 등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제정안 부칙은 법 시행일을 정하고(제1조),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제2조), 설립 당시의 관장 임명에 관한 특례(제3조)를 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해수호기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서해수호기념관의 관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관장 임명)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 당시의 관장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은 기념관 신규 건립과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위해서는 기념관의 건립 공사와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수행이 필요하므로,

법 시행일을 공포일부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²⁵⁾

○ 동 제정안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수행을 위하여 부칙 제2조에 “설립준비”를 규정하고 있는데,²⁶⁾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부칙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아 아직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고, 법률이 이미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준비행위 부칙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칙 제2조는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특수법인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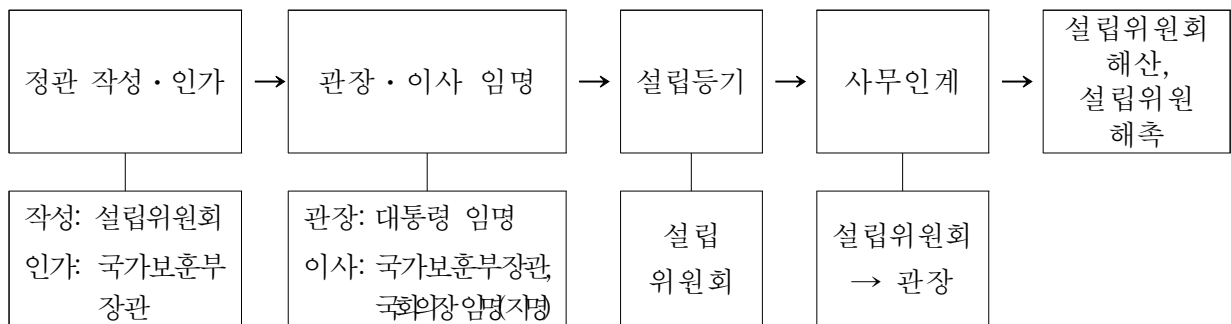
25) 유예기간은 기념관의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다면, 이를 참고하여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적절한 유예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6) 법 시행을 위하여 준비행위가 필요함에도 준비행위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시행 이후에야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 사실상 법률의 시행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 840.)

주무관청의 승인, 설립등기 등 설립 요건에 따른 준비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이 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22조), 「민법」은 설립등기사항으로 이사의 성명, 주소를 정하고 있어,²⁷⁾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등기 이전에 관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명 또는 지명이 필요한데,

[표 13] 법인 설립 절차



- 부칙 제2조제4항은 설립위원회가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설립위원회는 관장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7)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앞선 설립 절차와 같이, 설립등기 전 관장을 임명하게 되면 동 조항에 따라 설립등기 전이라도 설립위원회가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설립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법인 설립 절차 및 그 수행 주체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²⁸⁾

- 부칙 제2조가 법인 설립 절차에 부합하도록, 같은 조 제5항을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⁹⁾

- 부칙 제3조는 설립 당시의 관장 임명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이사의 임명 또는 지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장 외의 이사에 대한 임명 절차에 관하여도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8) 설립등기 이전에 관장을 임명하면 관장이 임명된 후 설립위원회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해산하도록 되어 있어 설립위원회가 설립등기를 수행할 수 없으며, 설립등기 이후에 관장을 임명하고 설립위원회가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 후 해산하면, 등기사항인 “이사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될 수 없음.

29) [참고 입법례]

「국립농업박물관법」 부칙<제18253호>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농업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 ⑧ (생략)

「정부법무공단법」 부칙<제8070호>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② (생략)

③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단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공단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사. 기타 체계·자구에 관한 조문 수정사항(안 제11조 및 제21조)

□ 그 밖에, 제정안은 일부 조항에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14] 체계·자구에 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정안	비 고
제11조(이사회) ④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회회장의 요구나 <u>재적이사</u> 3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회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제14조(	제11조(이사회) ④ ----- ----- <u>재적이사</u> -- ----- -----.	■ “이사” 오기
제21조(지도·감독)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u>제6조제1항의</u> 업무에 대 하여 서해수호기념관을 지도·감 독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 ---- <u>제6조의</u> ----- -----.	■ 안 제6조는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1

제정안과 유사 사례 기념관 비교

구 분	독립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임시정부기념관	안중근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소유자	독립기념관 (법인소유)	국가보훈부 (국유재산)	국가보훈부 (국유재산)	국가보훈부 (국유재산)	국가보훈부 (국유재산)	국가보훈부 (국유재산)
관리자	독립기념관	(재)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사)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	국가보훈부	(사)안중근의사 사충모회	(사)국제평화 기념사업회
시설 규모	■부지 3,919,233㎡(118만평) ■건평 64,595㎡(2만평) ■83개동	■부지 24,055㎡(7,277평) ■건평 2,119㎡(641평) ■지상 2	■부지 18,355㎡(5,552평) ■연면적 9,683㎡(2,929평) ■지하 1, 지상 2	■부지 3,656㎡(1,106평) ■건평 9,703㎡(2,935평) ■지하 3, 지상 4	■부지 5,772㎡(1,749평) ■연면적 3,756㎡(1,138평) ■지하 2, 지상 2	■부지 6,810㎡(2,060평) ■건평 8,000㎡(2,420평) ■지상 5
직원 (정원/ 현원)	139/130.3	8/8	14/14	84/84	8/8	12/12
재산의 성 격	법인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
관리 감독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공공 기관 여부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	-	- (국가기관)	-	-
기념관 건립 지원 방식	945억원 (국비247, 성금698)	129억원 (전액 국비)	167억원 (국비160, 성금7)	470억원 (전액 국비)	180억원 (국비146, 성금 34)	258억원 (전액 국비)
기념관 건립 지원 근거	독립기념관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기념관 운영 예산 지원	인건비, 경상경비, 기본사업 및 활성화사업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활성화사업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무직인건비, 시설관리비, 사업비 등	인건비, 시설관리비, 활성화사업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활성화사업비
'25년 예산 (국고 보조)	27,479백만원 - 인 건 비 : 9,437 - 경상경비 : 2,064 - 사업비 : 15,978	658백만원 - 인 건 비 : 277 - 기본경비 : 281 - 활성화비 : 100	1,759백만원 - 인 건 비 : 699 - 기본경비 : 1,060	9,224백만원 - 공무직 인건비 : 2,631 - 기관운영비 : 930 - 사업비 : 5,663	1,341백만원 - 인 건 비 : 361 - 기본경비 : 720 - 활성화비 : 260	1,619백만원 - 인 건 비 : 502 - 기본경비 : 817 - 활성화비 : 300
기념관 운영 방식	공공기관 (직접운영)	사업회에 위탁	사업회에 위탁계약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사업회에 위탁계약	사업회에 위탁계약
법인 예산 지원	기념관 운영비에 포함	운영비, 사업비 지원	지원하지 않음	해당없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법인 지원 근거	독립기념관법	독도의용수비 대지원법	-	-	-	-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

현충시설 중 기념관 지정 현황

구분	기념관 명	소재지	소유
국가 소유 (14개)	전쟁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백범김구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부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부
	백마고지전적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국방부
	유엔평화기념관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경상북도 울릉군	국가보훈부
	호남호국기념관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부
	해병3·4기 호국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방부
	공군박물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군사관학교
	보보의 집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부
	육사기념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지방 자치 단체 소유 (80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산안창호기념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산김창숙선생기념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윤동주 문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함석헌 기념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근현대사기념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회영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최용신기념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유엔군초전기념관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강화 3·1운동 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지평의병·지평리전투 기념관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조소앙 선생 기념관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안성3·1운동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의암류인석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서남궁역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재구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에티오피아한국전 참전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대포만세운동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백산기념관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기념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구분	기념관 명	소재지	소유
지방 자치 단체 소유 (80개)	외솔기념관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청
	밀양독립운동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대암 이태준 기념관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애국지사산돌 손양원목사기념관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김좌진장군기념관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의사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필경사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유관순열사 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이동녕선생생가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의암기념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단재영당(기념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의병전시관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낙동강승전기념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다부동전적기념관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지구전적기념관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왕산허위선생기념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심산기념관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화령장 전투전승기념관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이육사문학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박열의사기념관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운장이장년기념관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포항시
	대전리 3.1의거기념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소안항일운동기념관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광주백범기념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고하송진우선생기념관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오방 최홍종 기념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홍암나철기념관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일장김철선생기념관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구분	기념관 명	소재지	소유
지방 자치 단체 소유 (80개)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영암군
	정인승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가람문학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백정기의사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제주항일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한훈기념관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박춘실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박진전쟁기념관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양산시립독립기념관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강원광복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및 메모리얼 파크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장흥군
교육청 (5개)	학도병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승복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김재옥교사기념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교육청
	운문면3.18 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간 소유 (11개)	만해기념관	경기도 광주시	전보삼
	한용운선생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
	수당이남규선생 고택 및 기념관	충청남도 예산군	이문원
	항일독립운동역사관	충청북도 충주시	광복회
	덕신학교 기념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하동정씨유수공청주파종회
	서재필기념공원	전라남도 보성군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 주재년 열사 기념관	전라남도 여수시	신안주씨 돌산종친회 홍범문중
	백당기념관	전라남도 곡성군	(사)국조단국곡성송모회
	일광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일광시해의사.기념사업회
	남강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산학원
공공 기관 소유 (1개)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애국지사임병직박사 선양위원회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3

해군 제2함대사령부 ‘서해수호관’ 현황

□ 시설개요

- (건립배경) 서해 북방한계선 수호 의지를 고취하고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함대 내 안보공원을 조성하여 국민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
-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122
- (관리주체) 해군 서해수호관 * 직원수 17명(간부 8, 병 7, 군무원 2)
- (규 모) 건축면적 6,026.31㎡(1,849평)

□ 주요시설

구 분	서해수호관	천안함 전시시설	천안함 기념관
개관일자	2011. 09. 01.	2014. 12. 04	2017. 01. 02
건립예산 (백만원)	7,080 (시설 4,393, 전시 2,686)	8,000 (시공 7,200, 선체이송 800)	4,450 (시설 2,880, 전시 1,570)
전시내용	NLL,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교육	선체, 대형유물 3점, 전망대, 조형물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추모

□ 서해수호관 위치도

